HanaCBS 서비스 (기업용인터넷뱅킹) 이용계약서

_____(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하나은행(이하 "을"이라 한다)은 HanaCBS (Hana Corporate Banking System-기업용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며,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법령,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예금거래 기본약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기업용), 외환거래 기본약관, 기타 관련된 업무의 약관을 적용한다.

제1장 기본사항

제 1 조 (목 적)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HanaCBS (기업용인터넷뱅킹) 서비스의 이용 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HanaCBS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란 "갑"의 기업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을"이 인터넷을 통해 "갑"에게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를 말한다.

제 3 조 (업무의 범위)

본 계약에 의한 서비스는 다음 각 항의 업무로 하되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각종 조회 업무
2. 자금이체 업무(즉시이체, 예약이체, 대량이체, 대출원리금상환, 공과금납부 등)
3. 수출입외환 업무
4. 전자결제 업무
5. 자금집금 업무
6. 통합자금관리 업무
7. 상기 항목의 이용을 위하여 “갑”에게 필요한 각종 파일 및 처리결과의 송 · 수신 업무
8. 향후 본 서비스와 관련하여 “을”이 개발할 업무 및 기타 계약 없이 제공하는 각종 업무

제 4 조 (업무처리의 원칙)

1. "갑"과 "을"은 본 계약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을"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금융업무의 범위 내에서 "갑"에 대한 금융업무를 수행하기로 한다.
3. "갑"이 본 서비스의 이용을 위한 본인인증 방법은 제1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 5 조 (접속환경 구축)

"갑"은 본 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인터넷 접속환경을 스스로 구축하여야 한다.

제 6 조 (이용시간)

"서비스" 이용시간은 "을"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7 조 (의무)

1. "을"은 특별사정이 없는 한 본 계약에 의한 서비스를 지속적, 안정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갑"은 "갑"이 작성한 전산자료의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동 전산자료는 "을"이 정한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5-08-0130 (2012.09.01. 개정)
준법감시인 심사필 약관-12-134(2012.08.29)

제 8 조 (거래의 제한)

"을"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업무 또는 해당계좌에 대하여는 그 업무처리를 제한할 수 있다.

1.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14조(거래의 제한) 제1항 및 제2항의 각호” 에 해당되었을 경우
2. “갑”이 의뢰한 이체명세상의 계좌번호가 불명인 경우
3. 계좌비밀번호가 일자에 관계없이 연속하여 3회 잘못 입력되었을 경우
4. 본인확인을 위한 보안토큰 비밀번호가 일자에 관계없이 연속하여 5회 잘못 입력되었을 경우
5. OTP비밀번호가 전 금융기관을 합하여 일자에 관계없이 연속하여 10회 잘못 입력되었을 경우.

제 9 조 (거래내용의 확인)

"갑"과 "을"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된 거래내용을 HanaCBS시스템에 의하여 확인하며, 별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 교부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별도의 요청이 있고 양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0 조 (비밀유지)

"갑"과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인지 또는 획득한 제반사항을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유출된 내용이 쌍방 혹은 어느 한 쪽에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그 책임있는 당사자가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

제 11 조 (이용자 확인방법)

“갑”의 “서비스”이용에 따른 거래의 인증을 위하여 “을”이 요구하는 다음 각 항목을 “갑”이 입력했을 때 동 내용이 “을”에게 등록된 자료와 일치할 경우 본인으로 인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보안상 필요에 의해 “을”은 본인확인을 위한 항목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1. “갑”은 본 서비스에 따른 거래의 인증을 위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방식과 “보안토큰”을 통한 본인확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2. 공인인증서를 통한 이용자 확인방법
   1) 공인인증서를 통한 이용자 확인방법은 **공인인증서암호, OTP에서 생성되는 비밀번호**의 입력으로 한다.
   2) “갑”은 마스터(관리자)와 사용자 ID별로 **OTP**를 신청하여야 하며, "을"은 신청 받은 수량의 OTP를 교부하되, 동 발급비용은 "을"이 정한 금액에 따라 "갑"이 부담하기로 한다.
   3) “갑”은 마스터(관리자)와 사용자 ID별로 각자 본 서비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발급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
   4) 마스터(관리자)는 인증서 발급 절차를 마친 후, 로그인하여 각 사용자 별 권한등록을 마쳐야 각 사용자 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3. 보안토큰을 통한 이용자 확인 방법
   1) 보안토큰을 통한 이용자 확인방법은 **보안토큰 PIN번호, OTP에서 생성되는 비밀번호**의 입력으로 한다.
   2) “갑”은 마스터(관리자)와 사용자 ID별로 **보안토큰 및 OTP**를 신청하여야 하며, "을"은 신청 받은 수량의 보안토큰 및 OTP를 교부하되, 동 발급비용은 "을"이 정한 금액에 따라 "갑"이 부담하기로 한다.
   3) “갑”은 마스터(관리자)와 사용자 ID별로 본 서비스에 접속하여 각자 공인인증서 발급하여 각자의 보안토큰에 저장하는 절차를 마쳐야 한다.
   4) 마스터(관리자)는 인증서 발급 및 보안토큰 절차를 마친 후, 로그인하여 각 사용자 별 권한등록을 마쳐야 각 사용자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제 12 조 (Mobile 결재)

1. "갑"의 내부결재 방법으로 HanaCBS시스템을 통한 결재 이외에, 결재자의 휴대폰을 통하여 결재하는 Mobile 결재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갑"이 Mobile 결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을"은 Mobile 결재를 요청 받은 휴대폰에 결재를 위하여 입력된 해당 결재자의 Mobile 비밀번호 일치 여부만을 확인하여 별도의 본인확인이나 인증절차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13 조 (본지사통합관리)

본지사통합관리라 함은 "갑"의 동일법인내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갑"의 본사, 지사(지점), 영업소 등을 그룹화하여 "갑"이 통합관리 하는 것을 말하며, "갑"이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14 조 (별도의 계약)

본 시스템을 통하여 당행집금업무서비스, BiCNET(이하 '빅넷'이라 읽음), 등록금관리시스템, BiCNET Global 등의 업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별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15 조 (수수료)

1. 본 서비스의 가입 및 이용에 따르는 서비스이용수수료는 "을"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본 서비스내에서의 거래에 따르는 수수료는 해당 업무별 수수료 체계에 따르기로 한다.
3. "갑"은 "서비스" 이용수수료의 지급을 위하여 다음의 지급계좌를 지정하며, "을"은 예금거래기본약관 등에 불구하고 "갑"의 예금지급청구서 또는 수표 등의 제시없이 임의로 이용수수료를 인출한다.

수수료 지급계좌	계좌번호	예금주

4. "을"이 부가서비스 및 컨텐츠 제공과 관련하여 서비스의 일부를 유료서비스로 정하는 경우에는, "갑"은 동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당 수수료를 지불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6 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지며, 그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일방 당사자가 서면으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 17 조 (해지)

1.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즉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갑" 또는 "을"이 관계법령 또는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갑"이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갑"과 "을"은 제1항 각호 이외에 서비스를 계속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18 조 (면책)

"을"은 다음 각 항의 경우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의 경우
2. "을"의 귀책사유가 없는 통신기기 및 회선장애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전산장애 등에 의한 업무처리의 지연이나 불능의 경우
3. "을"의 통상적인 업무처리 절차에 의거 고의나 과실 없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경우

4. "갑"의 거래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결재비밀번호 등이 "을"에 신고된 것과 같음을 "을"이 확인하고 거래지시 내용대로 처리한 경우
5. 제4호에 의한 경우, "을"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접근수단의 위조·변조 기타의 사고로 "갑"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6. "갑"의 착오 또는 오류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의 경우
7. **보안토큰**의 분실, OTP의 분실이나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각종 비밀번호 및 공인인증서 암호의 관리소홀 등 "갑" 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제 19 조 (비밀번호, 보안토큰, OTP의 관리)

1. "갑"의 마스터 및 사용자는 공인인증서, 보안토큰, OTP와 비밀번호가 분실되거나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각종 비밀번호 오류입력으로 본 서비스 로그인이 제한되었을 경우 "을"의 영업점에 서면으로 신청 후 비밀번호를 재발급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보안토큰 , OTP를 분실한 경우에는 "을"의 영업점에 서면으로 사고신고서를 제출한 후 재발급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4. 보안토큰의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에는 마스터 및 사용자는 직접 초기화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5. 공인인증서 암호를 분실한 경우에는 마스터 및 각 사용자는 공인인증센터에서 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제 20 조 (준용사항)

자금이체 업무와 관련한 각각의 예금계좌에 대한 개별적인 업무처리는 "을"의 예금거래 기본약관과 당해 예금의 거래약관을 준용하고 "을" 이외의 타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이체는 금융결제원의 전자금융공동망 업무규약 및 세부처리지침을 준용하기로 한다.

제2장 이체

제 21 조 (업무처리의 원칙)

1. 자금이체한도는 "을"이 정한 최고한도 범위 내에서 "갑"이 각 사용자별로 1일 및 1회의 자금이체한도를 지정할 수 있다.
2. 거래의 성립은 은행의 컴퓨터에 의해 계좌간 자금이체가 완료된 시점에 성립한다.
3. 출금계좌에서의 출금은 소정의 지급청구서 또는 수표없이 처리한다.
4. 출금계좌에서 출금할 수 있는 금액은 이체시점에서 현금화된 예금잔액(대출한도포함)에 한한다.
5. 이체업무는 "갑"이 내부결재 절차를 완료한 후 "을"의 별도 확인절차 없이 실행한다.
6. "갑"은 수시로 잔액조회 및 통장정리를 통하여 거래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정상 처리되지 않은 이체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을"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7. 타행이체가 불능으로 처리된 경우 "을"은 출금계좌에 해당 거래금액을 입금 처리한다.
8. "을"이 이미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는 "갑"이 원칙적으로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9. 이체오류건에 대한 재처리는 별도의 등록, 결재과정 없이 등록자가 이체지정일에 한해 총3회까지 실행할 수 있다.
10. “갑”은 장래 시점으로 이체지정일을 정하여 예약이체 지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예약이체의 이체지정일로 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는 없다.
11. 이체지정일에 복수의 예약이체 의뢰가 있을 때에는 "을"이 접수 받은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제3장 예금계좌개설

제 22 조 (업무처리의 원칙)

1. "갑"은 본인명의 자유입출금식 예금(신탁)계좌(이하 '근거계좌'라 한다) 잔액 범위내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갑" 명의의 적립식 또는 거치식 예금(신탁)계좌(이하 '연결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입금할 수 있다.

2. 연결계좌는 인감 또는 서명신고를 생략하고 통장 발급없이 개설하며, 통상의 입금거래가 가능하다.
3. "갑"이 연결계좌의 통장을 발급 받거나 영업점을 통하여 연결계좌에서 출금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을"의 영업점에서 통상의 실명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4. 통장의 발급없이 본 서비스를 통하여 개설된 연결계좌를 해지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금액을 근거계좌로 대체입금 하도록 한다.
5. 근거계좌와 연결계좌 간의 적립금 납입은 자동이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신청으로 자동이체를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6. 연결계좌가 이자지급식의 경우에는 통상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기 이전에는 이자는 근거계좌로 입금한다.
7. 근거계좌의 해지는 연결계좌의 실명확인을 필하기 전에는 불가하며, 연결계좌의 거래영업점은 근거계좌의 영업점으로 한다.

제4장 대량이체

제 23 조 (업무처리의 원칙)

1. "갑"이 본 서비스를 통하여 대량이체업무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갑"의 내부결재가 완료되어 전송의뢰 명세가 "을"의 컴퓨터에 도달하는 즉시, "을"은 "갑"의 정당하고 유효한 거래의사로 간주하여 "갑"이 입력한 내용대로 통장이나 청구서, 수표, 어음 등 서면 자료의 징구나 별도의 확인 없이 출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입금의뢰계좌로 전송하기로 한다.
2. "갑"은 이체자금을 이체실행 전까지 출금계좌에 예치하여야 하며 "을"은 "갑"으로부터 의뢰받은내용대로 출금계좌의 지급가능잔액 범위 내에서 이체한다.
3. "을"은 금융결제원의 타행환공동망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자금이체를 실행한다.
4. "갑"은 이체완료된 내역을 본 서비스 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전 항에도 불구하고 통신기기 및 회선의 장애 또는 전산장애로 인한 업무처리의 장시간 지연이나 불능의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그 내용을 본 서비스 게시판에 등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통지한다.

제5장 급여이체

제 24 조 (업무처리의 원칙)

1. "갑"이 본 서비스를 통하여 임직원에 대한 급여이체를 의뢰하는 경우, "갑"의 내부결재가 완료되어 전송의뢰 명세가 "을"의 컴퓨터에 도달하는 즉시, "을"은 "갑"의 정당하고 유효한 거래의사로 간주하여 "갑"이 입력한 출금계좌로부터 통장이나 별도의 예금청구서 없이 지급하여 "갑"이 입력한 임직원개인 급여계좌에 입금하기로 한다.
2. 수취인계좌 불명 등으로 해당 계좌에 입금되지 못한 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절차 없이 인출하여 출금계좌에 입금 처리한다.
3. 일반적인 업무처리는 전장 대량이체를 준용한다.

제6장 외환

제 25 조 (업무처리의 원칙)

1. "갑"이 본 서비스를 통하여 수출환어음매입(추심), 수입신용장개설, 내국신용장개설, 내국신용장어음 매입(추심) 등의 업무를 신청한 경우에는 거래영업점(RM)에 당일중 신청관련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한 대로 처리되었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2. 해외송금시 외환거래관계법령 등에서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언급한 경우에는 "갑"은 그 필요한 절차를 필한 이후에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한다.

제7장 전자결제

제 26 조 (업무처리의 원칙)

"갑"이 본 서비스를 통하여 채권발행, 변경, 취소, 대출 등 전자결제 업무와 관련된 거래 등을 하는 경우, "갑"이 내부결재를 완료하여 "을"의 컴퓨터에 도달하는 즉시, "을"은 "갑"의 정당하고 유효한 거래의사로 간주하여 별도의 서류확인 등의 절차 없이 "갑"이 입력한 내용대로 처리하기로 한다

제8장 통합자금관리

제 27 조 (서비스의 정의)

본 서비스는 "갑" 이 "을" 및 다른 금융회사에 이미 개설한 계좌에 대하여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조회,이체 등의 업무를 한 화면에 통합하여 수행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 28 조 (업무처리의 원칙)

1. "갑"이 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을" 또는 타행에 대상계좌를 개설하고, 대상계좌에 대한 인터넷뱅킹 계약을 완료하여,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비롯한 각종 보안관련 자료(OTP카드, 인증서, 암호 등)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2. 대상계좌에 대하여 각 해당 계좌개설 금융회사의 인터넷뱅킹시 필요로 하는 내용대로 "갑"이 정당하게 처리하여 거래가 완료된 경우, "을"은 해당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해당 거래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거래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계좌개설 금융회사가 정한 수수료체계에 따른다.
4. "갑"은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계좌정보와 비밀번호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보안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을"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장 부속사항

제 29 조 (협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계약 해석상의 이의발생시에는 일반 상관습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30 조 (관할법원)

본 계약상의 해석이나 이해에 있어 상호 이견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31 조 (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향후 본 서비스와 관련하여 추가로 개발된 업무가 있거나 부득이한 업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을"이 동 사실을 서비스 초기화면을 통하여 1개월 이상 공지하고, "갑"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변경된 내용을 적용하기로 한다.

제 32 조 (기타)

본 계약체결 후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설비, 기술, 법규상의 문제로 인해 서비스 개시에 지장이 있을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서비스 이용 개시를 연기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갑"과 "을"은 본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확인하고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의 쌍방이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을)

기업명 : (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지점장(인)

주 소 :

[붙임]

HanaCBS 등록 신청서

담 당	책임자	지점장

HanaCBS를 사용할(사용하는) "갑"의 등록내용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구분	□ 신규 □ 해지 □ 변경 (변경항목:)
	□ 보안토큰(발급 / 재발급 / 분실 / 분실해제 / 훼손) □ 기타 ( )

♦ **기업 기본정보**

기 업 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영문기업명		팩스번호	
전화번호(내선)	( )	연락담당자 및 직위	
주 소			

♦ **마스터(기업內 총괄관리자) 정보** (영문자 1자 이상 포함, 최소 6자에서 최대 10자)

마스터 I D	□ OTP □ HSM	마스터 권한 구분	□ 마스터 + 사용자 □ 마스터
마스터 성명		※"마스터"만 선택시 사용자업무(조회,등록,결재)가 제한되며, 사용자의 권한설정 기능만 가능합니다.	

♦ **사용자 추가** (영문자 1자 이상 포함, 최소 6자에서 최대 10자) – ID란 부족시 별지첨부 가능

사용자 ID	□ 신규 □ 해지 □ OTP □ HSM	사용자 ID	□ 신규 □ 해지 □ OTP □ HSM
사용자 ID	□ 신규 □ 해지 □ OTP □ HSM	사용자 ID	□ 신규 □ 해지 □ OTP □ HSM
사용자 ID	□ 신규 □ 해지 □ OTP □ HSM	사용자 ID	□ 신규 □ 해지 □ OTP □ HSM

♦ **거래별 사용여부 및 한도**

로그인방식	□ 공인인증서 □ 보안토큰(HSM)	수수료출금계좌	
이 체	1일이체한도 (백만원)	출금계좌지정 서비스 ※미신청시 마스터가 웹상에서 직접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 해지
	급여이체계좌 :		출금계좌:
본지사통합관리 ※ 별도 추가 계약 체결 필요	□ 신청 □ 해지 (동일법인의 지점 및 지사관리)		

※ 로그인방식 중 보안토큰(HSM)방식은 **보안토큰 비용이 별도 부과됩니다.**

♦ **기타변경사항**

변경사항1 ( )	변경사항2 ( )

♦ **위 임 장** (※법인고객만 위임 가능)

본인은 HanaCBS 등록신청서를 이용하고자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청합니다.

대리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관 계		위 임 인	(법인인감)

본인은 □OTP(일회용비밀번호발생기) □보안토큰(HSM)을 수령하고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OTP, 공인인증서 암호, 사용자암호 등)를 제3자에게 대여, 사용위임 또는 양도 담보 제공하거나 본인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6조)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과 HanaCBS(기업용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계약서를 동의 및 승인하고 수령하며 위와 같이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실영확인 진위여부 확인필(인)

본인 및 인감확인

신청 및 수령인 : 회사명_____

대표자_____ 인

(법인인감)

5-08-0130 (2012.09.01. 개정)

준법감시인 심사필 약관-12-134(2012.08.29)